

의안번호	2203432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4.09.24.
추 계 번호	24C335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제1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이하 “방사능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3조(벌칙)	(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3호 ¹⁾ 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안 제23조(벌칙)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안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2. 상세 사유²⁾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24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위생법」 제22조³⁾ 등에 근거하여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인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및 기타'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함
 - 다만,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개정안에 따라 실시할 방사능 검사의 방법 및 기준, 절차 등은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움
 - 개정안에 따라 실시될 방사능 검사는 '24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해당 검사와 달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직, 인력, 사업 등을 분리하여 실시할 것인지 또는 위탁 실시할

2) 또한, 안 제23조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공급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국가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의 위반횟수 및 금액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3)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것인지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함

- 또한, 방사능 검사의 실시 방법, 대상, 기준 또한 현행 방사능검사와 학교 식자재를 달리 규정할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다만, 개정안은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상이 어려움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한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